



## 나. 주요내용

- 출연처 : 충남연구원
- 출연시기 : 2022. 10. ~
- 소요예산 : 300백만원(증액)
- 주요내용 : 신 삼교역 주변 국가산업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추진

## 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이완호)

- 본 동의안은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·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설립된 충남연구원을 통해 신 삼교역 주변 국가 산업단지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 변경(30백만원 ⇒ 330백만원)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,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재정지원)에서 동법 제4조제1항제2호의 『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』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,
-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3조(운영재원)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,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(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,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)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.
- 「지방재정법」 18조와 관련한 유권해석(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-5338(2015.9.30.))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근거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연구원에 출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“광역자치단체 조례에 시장,군수가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면 기초자치단체도 출연이 가능하다” 는 요지의 회신이 있었으며,
- 「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·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(사업)에 “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 경제 진흥, 역사문화의 보존·계승, 환경보전 등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연구·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” 고 되어있고, 동 조례 제6조(운영경비)제2항에서 “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” 고 되어 있음.

- 따라서 충남연구원에 예산군에서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은 충남연구원의 설립 목적과 관계법령에 부합하므로,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다만 3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내포신도시 주변의 토지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조성원가 상승에 따른 분양가격 상승 등 경제적인 측면과 효율적인 예산 사용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